

# 안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- 정부합동지표평가인 「지자체 경쟁제한적 지치법규 개선율」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「경쟁제한적 지치법규(조례·규칙)」 규제개선과제 통보 시행  
※ 예산법무과-9917(2018.7.5.)호에 의거 추진
- 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 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인터넷 시스템의 개발,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 (안 제3조)
-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“사이버 민원실” 을 “전자민원 창구”로 명칭변경 (안 제8조)
- 전자우편 ID의 상용 보편화로 보급이 무의미하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민원 ID 보급부분을 삭제한다. (안 제14조, 제15조)
-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 유도하는 이용자참여 활성화 운영부분을 신설한다. (안 제14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입법예고 : 2018. 9. 19. ~ 2018. 10. 8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현행조례 : 붙임4

방침결정문 : 붙임5

## < 불임 1 >

### **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” 를 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사이버민원실” 을 “전자민원창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인터넷 시스템의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을 신설한다

제8조 제목 중 “사이버민원실” 을 “전자민원창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“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” 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이버민원실” 을 “전자민원창구”로 한다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“사이버민원실을 통한 민원중 수수료 등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후에 성립한다” 를 “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발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수수료,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발급한다.”

제10조제2항 중 “사이버민원실” 을 “전자민원창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이버민원실” 을 각각 “전자민원창구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.

제14조(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)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, 그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하고,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.

제16조(종전 제17조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“개인정보 처리방침”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정보통신과
입 안 자	실·과장	정보통신과장
	직위·성명	이 동 표
	담당·팀장	정보기획팀장
직위·성명		김 준 기
담당자		이 경 옥
성명·전화		(행정 2819)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"개인정보"라 함은 <u>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</u>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 <u>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</u>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사이버민원실</u> 운영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전자우편 ID 이용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</p> <p>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자민원창구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삭제 &gt;</u>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제4항에 따른 인터넷 시스템의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</u></p>
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	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<u>사이버민원실</u>의 설치 · 운영)</p> <p>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<u>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</u>을 설치하여야 하며,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사이버민원실</u>은 인터넷 민원처리, 민원처리 공개,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<u>전자민원창구</u>의 설치 · 운영)</p> <p>①-----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-----.</p> <p>② <u>전자민원창구</u> -----.</p>
<p>제9조(인터넷 민원처리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<u>사이버민원실을 통한 민원중 수수료 등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후에 성립한다.</u></p>	<p>제9조(인터넷 민원처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수수료,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발급한다.</u></p>
<p>제10조(민원처리 공개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 까지의 과정을 <u>사이버 민원실</u>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민원처리 공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전자민원창구</u>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민원상담 기능 제공)</p> <p>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전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<u>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,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제11조(민원상담 기능 제공)</p> <p>① ----- <u>전자민원창구</u> -----.</p> <p>② <u>전자민원창구</u>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u>제14조(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)</u> <u>시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,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</u>	<u>제14조(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)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, 그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
<u>제15조(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)</u> ① <u>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다.</u> ② <u>시장은 전자우편 ID의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.</u>	<u>&lt;삭 제&gt;</u>
<u>제16조 (생 략)</u>	<u>제15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u>
<u>제17조(개인정보보호)</u> ① ~ ② <u>(생 략)</u> 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6조(개인정보보호)</u> ① ~ ② <u>(현행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u> ③ <u>시장은 “개인정보 처리방침”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
<u>제18조 · 제19조 (생 략)</u>	<u>제17조 · 제18조 (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)</u>